

수 신: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참 조: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7 형사부

발 신:중화인민공화국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TEL:02-755-0524 FAX:02-755-0469

발신일:2014년 2월 13일

내 용:사건번호 2013 노 272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의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번역문 첨부)



中华人民共和国大使馆

中华人民共和国驻大韩民国大使馆领事部向首尔市高等法院致意，并谨就贵院 2013 ㄱ 2728 违反国家保安法（间谍）案所询文书真伪情况答复如下：

一、经中国有关部门调查，刘家刚辩护律师提交的延边朝鲜族自治州公安局出具的《出入境记录查询结果》、三合边境检查站出具的《情况说明》两份材料内容属实，文书真实合法。检方提交的和龙市公安局《出入境记录查询结果》、三合边防检查站出具的《关于刘家刚出入境记录〈情况说明〉一事的答复》及和龙市公安局致大韩民国驻沈阳总领馆公文等三份文书均系伪造。

二、韩国检方出具的公文涉嫌伪造中国机关公文、印章，属刑事犯罪行为，中方将依法进行调查。希协助向我方提供详细的伪造文书来源，以便追究犯罪嫌疑人刑事责任。

顺致敬意。

中华人民共和国驻大韩民国大使馆领事部

2014年2月13日



[번역문]

서울고등법원:

중화인민공화국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서울고등법원에 경의를 표하며, 귀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사건번호 2013 노 2728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의 사실조회서를 통해 요청하신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1. 중국의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가강의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된 《정황설명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 두 문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입니다. 경사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참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2. 한국 검찰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오니,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본 부에 제공해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송고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주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2014년 2월 13일